

고성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군의회 의견 요청안  
( 의안번호 제506호 )

심사 보고서

1998. 11. 7.
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0. 26 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8. 10. 27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8. 11. 4 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

- 기 결정된 하수종말처리장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역행되고 있으므로 농지의 보전기능을 강화하며
- 방류수 방류의 용이 및 하수차집의 원활을 위한 증계펌프장 설치와 차집관거 설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고
- 분뇨 및 축산폐수 시설도 병행 설치하기 위해 규모를 확장하여 방류해역의 수질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를 변경하고
-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진입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도로를 폐지하고자 고성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요청함.

3. 도로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			
폐지	소로	2	93	8m	국지 도로	52	대 1-1 ----- 동외 62-5	----- ----- 동외 2-14	일반 도로	

4. 군의회 의견 요청사항

- 고성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에 대한 타당성 여부

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하수종말처리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은 제안사유를 검토한 결과 위치선정 등은 생활하수만 처리하는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시행후 축산폐수 등 종합처리는 분뇨, 축산폐수의 수집운반과 처리시의 악취로 인근마을 거류면 가려리 송정리와 고성읍 죽동마을 주민과 인근 농경지 경작자 등의 집단민원이 예상됨으로 신중한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였음.

## 6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공사가 착공상태에서 의견청취가 가능한지
- 답 : 사전에 결정의견을 받아야 하나 예산등 부지확보 등으로 인해 늦게 요청되어 죄송함.
- 문 : 공사시행의 문제점은
- 답 : 예산문제는 별무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은 것에 대해 죄송함.
- 문 : 기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지 및 시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
- 답 : 기존 시설결정은 원상태로 회복이 될 것임.

## 7. 토론 : 시설변경 결정없이 선 입지선정과 공사착공후 시설결정 의견요청에 따른 집행부의 질책

## 8. 심사결과

- 1998. 11.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불임과 같은 의견을 회시키로 의결하였음.  
※ 고성군의회의견서 : 별첨

# 고성군의회 의견서

제 목	고성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군의회 의견요청안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 □ 의견

고성도시계획에 기히 결정되어 있던 고성 하수종말 처리장은 제안이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위치와 주변 여건이 불합리할 뿐 아니라 금번 하수와 축산폐수, 분뇨 등 종합처리장으로 변경 결정 시설하므로서 쾌적한 환경과 수질오염 예방에 이바지 할 것으로 봄.

1998년 11월 7일

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욱